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권한위임사무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용량을 산업자원통상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 에 따라 개정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84조 [별표 3])

나. 권한위임사무 중 태양에너지 설비 발전용량 개정(안 제84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jaemo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3)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호제1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로, “태양에너지 설비로 발전용량이 50킬로와트”를 “태양에너지 및 풍력 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300킬로와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계획시설 (1) ~ (2) (생략) (3)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유통·공급시설 중 시장, 전기공급설비(발전소로 발전용량이 500킬로와트 이하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서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u> 해당하는 <u>태양에너지 설비로</u> 발전용량이 50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군수가 설치하는 것에 한함) (4) ~ (7) (생략)	1.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계획시설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u>----- <u>태양에너지 및 풍력 설비로</u> <u>발전설비용량이 300킬로와트</u> ----- -- (4) ~ (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기반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조(정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
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⑤ 삭제 <2005.12.7.>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
9.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4.1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23.>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전문개정 2014.11.28.]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① 발전설비용량 10 kW 이하 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또는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 충
충·방전설비용량이 10 kW 이하 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
시스템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
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등"이
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 kW 이하로 한다.